

의안 번호	1619	<p align="center"><b>[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b></p> <p align="center"><b>검 토 보 고 서</b></p>
----------	------	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4. 29.(수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5. 1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5. 13.(수)

### 2. 개정이유

한옥체험시설인 어련당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평일 시설 사용을 유도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 정비 및 감면 규정 신설
  - 1)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면제(안 제7조제3항제1호)
  - 2)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0퍼센트 감면(안 제7조제3항제2호)
  - 3) 관광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면제 또는 감면(안 제7조제3항제3호)
- 나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준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(안 제11조제2항)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

### 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(사용료) 및 제139조(사용료 징수조례 등)
- 나. 「관광진흥법」 제67조(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)
- 다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한옥체험시설인 어린이당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평일 시설 사용을 유도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법」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용어가 정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

# 근거법규

## 지방자치법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 관광진흥법

제67조(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)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,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,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##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“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##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